

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

경상남도 공고 제2010 - 68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·공고 합니다.

2010년 1월 28일

경 상 남 도 지 사

1. 대상지역 및 면적

- 경남 진해시 성내동, 남문동, 제덕동, 수도동, 연도동, 남양동, 마천동, 소사동, 대장동, 두동, 청안동, 안골동, 용원동, 가주동 (14개동) 일원 32,433,570m²

동 별	지정면적(m ²)	비 고
합 계	32,433,570	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사업 완료구역 제외
진해시 성내동	178,877	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사업 완료구역 제외
" 남문동	3,388,995	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사업 완료구역 제외
" 제덕동	2,852,589	개발사업 완료구역 제외
" 수도동	1,708,582	동전역(경제자유구역청 관할)
" 연도동	56,500	동전역(경제자유구역청 관할)
" 남양동	1,476,190	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사업 완료구역 제외
" 마천동	3,160,079	개발사업 완료구역 제외
" 소사동	1,527,718	개발제한구역 제외
" 대장동	960,358	개발제한구역 제외
" 두 동	7,011,827	개발사업 완료구역 제외
" 청안동	1,102,919	개발사업 완료구역 제외
" 안골동	2,190,928	개발사업 완료구역 제외
" 용원동	3,182,201	개발사업 완료구역 제외
" 가주동	3,635,807	동전역

※ 자세한 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열람

2. 지정기간 : 2010년 3월 1일 ~ 2011년 2월 28일(1년간)

3.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180m ² 를 초과하는 토지
	상업지역	200m ² 를 초과하는 토지
	공업지역	660m ² 를 초과하는 토지
	녹지지역	100m ² 를 초과하는 토지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	90m ² 를 초과하는 토지
도시지역 외의 지역	농 지	500m ² 를 초과하는 토지
	임 야	1,000m ² 를 초과하는 토지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0m ² 를 초과하는 토지